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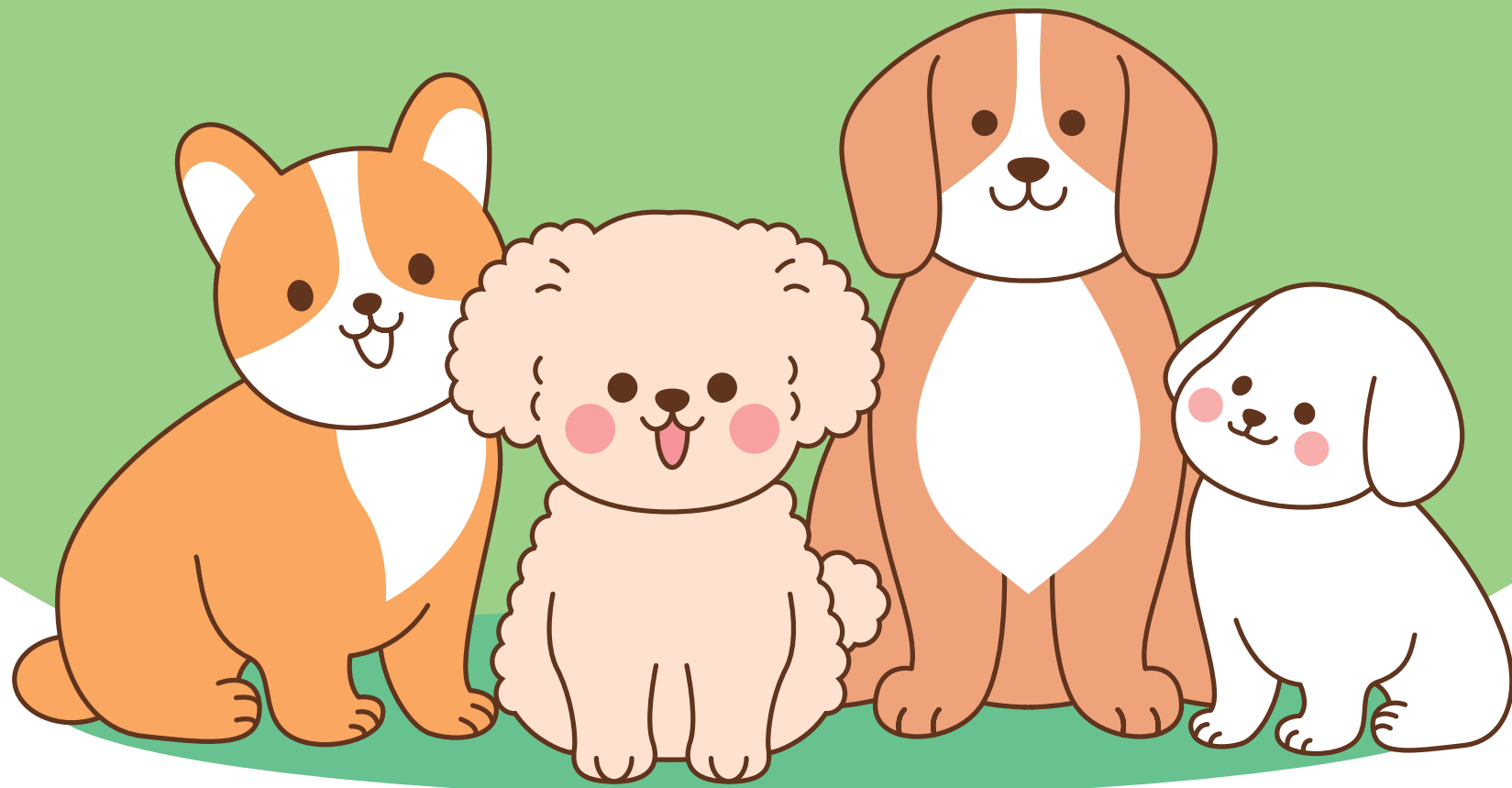
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

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.

“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
과태료가 면제됩니다. ”

1차 자진신고 5.1.~6.30.
집중단속 7.1.~7.31.

2차 자진신고 9.1.~10.31.
집중단속 11.1.~11.30.



동물등록 대상

- 2개월령 이상인 개
(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)
- ☑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!

- 1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
- 2 유기동물 발생 감소
- 3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
(반려동물 놀이터,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)

동물등록 방법

내장형 방식

- 1 동물병원 방문
- 2 내장칩 시술(주사)
- 3 등록 완료

외장형 방식

- 1 시·군·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
(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) 방문
- 2 외장형 장치 구입
- 3 등록 완료

☑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(www.animal.go.kr)에서 확인 가능

✓ 안전합니다 

변경신고 대상

10일 이내 ●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

●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
● 소유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

30일 이내 ●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
●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
● 외장형 목걸이 분실,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
변경신고 방법

-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
- 2 시·군·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
- 3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(소유자 변경, 사망, 잃어버림, 다시 찾음, 중성화 신고만 가능)

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(국번없이)120,
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-0954로 문의주세요.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